

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

[시행 2008. 7. 3] [대통령령 제20898호, 2008. 7. 3, 일부개정]

제1조 (목적) 이 영은 「정보화촉진 기본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8.31, 2006.11.23>

제2조 (정보자원관리 대상기관의 범위) 「정보화촉진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2항에서 "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"이라 함은 제22조에 따른 비영리기관중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06.11.23>

[본조신설 1999.6.30]

[중전 제2조는 제2조의3으로 이동 <1999.6.30>]

제2조의2 (정보자원현황등의 작성·관리)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정보자원현황등을 체계적으로 작성·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자원관리방안을 작성하여야 한다.

1. 정보자원현황등의 작성·관리의 기본방향
2. 정보자원의 현황 및 운영(외부 위탁운영을 포함한다)에 관한 사항
3. 정보기술의 도입·투자관리에 관한 사항
4. 정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
5. 기타 정보자원현황등의 작성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관리방안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
[본조신설 1999.6.30]

제2조의3 (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고시)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
[제2조에서 이동<1999.6.30>]

제3조 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법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매년 5월말까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종합·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6.30, 2008.2.29>

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에 있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
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중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- ④시행계획은 매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말까지 확정한다. <개정 1999.6.30>

제4조 (위원회의 운영)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,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위원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심의와 법 제9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에 관한 검토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⑤위원회는 매년 법 제9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 시책의 추진실적의 평가내용을 정부의 정보화촉진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5조 (의사 및 의결정족수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 (실무위원회)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정보화촉진실무위원회(이하 "실무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,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08.7.3>

1.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거나 그에 준하는 공무원으로서 정보화업무를 관장하는 사람
2. 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행정안전부의 국가사회정보화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이 공동으로 하며,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 <개정 2008.7.3>

- ③ 실무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<신설 2008.7.3>

④실무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국가사회정보화촉진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된다. <개정 1999.6.30, 2006.6.12, 2008.2.29, 2008.7.3>

⑤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검토·심의한다. <개정 2008.7.3>

⑥실무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중 산업·경제정책 및 자금 조달 등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부차관인 위원의 주관하에 관계위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08.7.3>

⑦실무위원회는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7.3>

제7조 (분과위원회) ①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분야별로 두는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(이하 "분과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제2호 내지 제11호의 분과위원회의 소관업무를 제외한 정보화추진업무에 대하여는 전자정부추진분과위원회의 소관업무로 한다. <개정 2006.11.23>

1. 전자정부추진분과위원회
2. 경제산업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
3. 교육문화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
4. 사회복지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
5. 국가안보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
6. 형사법제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
7. 정보통신인프라추진분과위원회
8. 정보보안추진분과위원회
9. 입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
10. 사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
11.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

②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소관분야의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소관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개정 1999.6.30>

③분과위원회는 소관분야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1999.6.30>

1. 시행계획
  2. 정보화 추진실적평가
  3. 삭제 <1999.6.30>
  4. 관련법령 및 제도의 개선
  5. 정보 공동활용 관련사항
  6. 기타 정보화추진을 위한 협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④ 삭제 <1999.6.30>

제8조 (수당) ①위원회·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공무원이 아닌 정보화추진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 (운영세칙) 위원회·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이외에 회의의 소집등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각 해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정한다.

제10조 (중요한 사항) 법 제9조제1호 및 제2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"이라 함은 정보화의 추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(이하 "정보화 촉진등"이라 한다)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거나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.

제10조의2 (정보화계획 반영 대상사업 등) ①법 제9조의3제1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투자사업"이라 함은 별표와 같다.

②행정안전부장관은 별표에서 정한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계획(이하 "정보화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

③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지원을 위하여 정보화계획의 수립지침을 개발·보급하고,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  
[본조신설 1999.6.30]

제11조 (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지원사업 <개정 2006.11.23>) ①법 제10조제3항제7호에 따라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등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의 정보화추진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 <개정 2006.11.23>

1. 공공기관의 국내외 정보통신망 상호접속 및 이용활성화
2. 공공기관간 정보공동활용 및 정보통신망 연계업무
3.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책임관 업무의 지원
4.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감리제도 지원
5. 위원회·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

②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06.11.23>  
[전문개정 1999.6.30]

제11조의2 (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)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불특정다수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·저장·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장비에 음란물 및 폭력물 등 불건전 정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

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이 정보통신서비스를 건전하게 이용하기 위하여

여 필요한 관리적·기술적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01.8.25, 2005.8.31, 2008.2.29>  
[본조신설 1999.6.30]

제12조 (정보문화의 확산정책)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문화의 확산정책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정보문화에 관한 계몽·홍보 및 교육
2. 정보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·학술행사등 지원
3. 정보문화확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육성·지원
4.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 부대사업

제12조의2 (전자적 정보소재안내) ①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검색·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정보소재안내시스템(이하 "안내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하여야 한다.

②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안내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.

③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안내시스템에 관한 표준의 설정 등을 통하여 안내시스템간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

[본조신설 1999.6.30]

제12조의3 (공공기관간 정보공동활용) ①정부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중 행정업무처리 및 대국민서비스의 제공에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본데이터베이스로 지정하고 공공기관간에 이를 우선적으로 공동활용하게 할 수 있다.

②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기본데이터베이스의 공동활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서류제출의 요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1999.6.30]

제13조 삭제 <1999.6.30>

제14조 삭제 <2001.8.25>

제15조 삭제 <2001.8.25>

제16조 (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등)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합치여부를 평가 또는 인증하는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인증하는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협의에 갈음할 수 있다. <개정 1999.6.30, 2008.2.29>

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그 시스템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합치되는지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장 또는 관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스템을 조사 또는 시험·평가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7.8.17, 2008.2.29>

③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·평가를 요청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장 또는 관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의 장이 산정한 수수료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8.25, 2007.8.17, 2008.2.29>

④ 삭제 <1999.6.30>

⑤ 삭제 <1999.6.30>

⑥ 삭제 <1999.6.30>

제17조 (정보통신이용자의 위해방지등)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통신관련 기기 및 역무등으로 인한 생명·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관련 기기 및 역무등에 관한 정보통신이용자 위해방지기준, 그 용도 및 사용방법상의 주의사항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관련 기기의 제조자·수입업자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1999.6.30, 2001.8.25, 2005.8.31, 2008.2.29>

제17조의2 삭제 <2004.7.24>

제18조 (기술개발비의 지원)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금은 이를 분할하여 지급한다. 다만, 연구개발사업의 규모·착수시기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자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,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

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지원목적 이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때에는 이를 회수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

④기타 지원의 방법·절차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08.2.29>

제18조의2 (정보통신산업단지의 지원)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
당하는 단지 또는 시설 등(이하 "단지등"이라 한다)중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율, 단지등이 위치한 지역의 주요산업과 정보통신의 연계발전 가능성 및 정보통신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지등으로 한다. <개정 2003.6.30, 2005.8.31, 2006.3.8, 2007.9.10, 2008.2.29>

1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
  2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7조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
  3.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
  4. 「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협동화단지 및 중소기업전용산업단지
  5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
  6.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
  7. 「유통단지개발 촉진법」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
  8. 「화물유통촉진법」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
- ②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등을 지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05.8.31, 2008.2.29>
-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단지등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 등을 활용하여 그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05.8.31, 2008.2.29>
1. 정보통신산업 집적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
  2. 산학연협동연구 등 정보통신연구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
  3. 그 밖에 지역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정보화촉진에 필요한 사항
-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08.2.29>
- [본조신설 1999.6.30]

제19조 (정보통신우수신기술의 지정 등)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우수신기술(이하 "신기술"이라 한다)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
1. 기술의 명칭 및 개발자
  2. 기술의 내용 및 특허 등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자료
  3. 동종 또는 유사 기술과의 비교
  4. 기술의 응용분야 및 응용사례
  5. 기술의 파급효과
  6.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-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신기술로 지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1. 기술의 신규성 및 고도성
  2. 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
  3. 기술의 기술적·경제적 파급효과
  4. 기술의 산업화가능성
-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거나 이를 사업화할 경우에는 기금 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
1. 기술지도 및 품질인증획득 지원
  2. 기술 및 경영애로해소 지원
  3. 연구개발 및 사업화자금 지원
  4. 창업 및 홍보 지원 등
- ④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05.8.31, 2006.10.27, 2008.2.29>
1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
  2. 국·공립연구기관
  3.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(이하 "기간통신사업자"라 한다)
  4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,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신기술보육사업을 하는 자
  5. 「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
  6. 「중소기업 창업지원법」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
-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의하여 신기술을 사업화함으로써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로부터 신기술에 의한 순매출액의 2퍼센트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05.8.31, 2008.2.29>
- ⑥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- ⑦이 영에서 정하는 것외에 신기술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>
- [전문개정 1999.6.30]

제20조 삭제 <1996.6.29>

제21조 삭제 <1996.6.29>

제21조의2 (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 등)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(이하 "전담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초고속국가망의 구축·관리
2.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광대역통합연구개발사업
3. 미래인터넷 등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신기술 검증을 위한 선도(선도)사업
4. 광대역통합정보통신의 응용기술 개발사업
5.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품질관리 및 구내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시범지역사업
6.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촉진을 위한 산업기반시설·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정보통신산업단지  
의 지원사업
7.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
8. 대국민 홍보사업
9. 법·제도연구사업
10. 국제협력사업
11. 경쟁력기반기술개발사업
12.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
13. 그 밖에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이용촉진에 필요한 사업

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분야별 세부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전담기관의 사업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.

[본조신설 2008.2.29]

제21조의3 (기간통신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초고속국가망 관련 업무)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기간 통신사업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관련 업무의 일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초고속국가망의 설계 및 구축
2. 초고속국가망의 운용
3. 초고속국가망의 유지보수 및 장애발생에 대한 효율적 복구
4. 초고속국가망 이용기관에 대한 요금의 부과징수 및 관리
5. 그 밖에 초고속국가망의 효율적인 구축·관리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[본조신설 2008.2.29]

제22조 (비영리기관의 범위) 법 제28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기관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1999.6.30, 2004.12.30, 2005.8.31, 2007.3.27, 2008.2.29>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
2.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
3. 「의료법」 제30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, 「국민연금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
4.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
5. 「도서관법」에 의한 도서관
6.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기관

제23조 (초고속국가망의 구축·관리)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(이하 "전담기관"이라 한다)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고속국가망을 구축·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
1. 초고속국가망 구축·운영의 세부사업계획 수립
2. 정부출연재원의 집행계획수립과 집행 및 관리
3. 초고속국가망의 구축·운영 및 유지보수
4. 초고속국가망의 수요조사 및 이용계획 수립
5. 초고속국가망의 보안성 확보
6. 기타 초고속국가망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관련업무의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일부를 시행하게 할 경우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선정기준, 절차등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
④전담기관의 장은 초고속국가망의 이용기관, 이용조건등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
제24조 삭제 <1999.6.30>

제25조 삭제 <1999.6.30>

제26조 (관로등의 건설·대여 요청등)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·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(이하 "기간통신사업자등"이라 한다)가 관로·공동구·전주등(이하 "관로등"이라 한다)의 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등과 관로등에 대한 수요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6.30, 2004.12.30>

②도로·철도·지하철도·상하수도·전기설비·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 건설·운영·관리하는 기관(이하 "시설관리기관"이라 한다)이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로 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받는 경우에는

시설관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는 날부터 3월 이내에 기간통신사업자등과 건설 또는 대여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6.30>

제27조 (조정요청 및 심의) ①기간통신사업자등과 시설관리기관간의 협약이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등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1999.6.30, 2008.2.29>

②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을 받아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

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익등을 참작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평한 협약체결을 위한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. <개정 1999.6.30, 2008.2.29>
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
⑤ 삭제 <2008.2.29>

제27조의2 (관로등의 건설·대여에 관한 조정요청)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협정에 관한 조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관로등의 건설 등 협정조정요청서에 합의결과 및 추진상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08.2.29]

제28조 (기금계정의 설치) 지식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
[전문개정 2004.12.30]

제29조 (기금운용심의회 의 구성·운영) ①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「국가재정법」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. <개정 2005.8.31, 2006.12.29, 2008.2.29>

②기금운용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04.12.30, 2005.8.31, 2006.12.29, 2008.2.29>

1.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립

2.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

3.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

4. 「국가재정법」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지침의 제·개정

5.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③기타 기금운용심의회 의 구성·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>

제30조 삭제 <2004.12.30>

제31조 (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등)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위탁한다. 이 경우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. <개정 1997.2.22, 1999.1.29, 1999.6.30, 2008.2.29>

②지식경제부장관은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대출금리등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 <개정 2004.12.30, 2008.2.29>

제32조 (기금의 회계기관)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·기금재무관·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. <개정 2002.12.30, 2008.2.29>

② 삭제 <2002.12.30>

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,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,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,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,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. <개정 2002.12.30, 2008.2.29>

④ 삭제 <2002.12.30>

제33조 (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사업 등) 법 제35조의2제2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정보통신기술개발 지원
2. 정보통신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지원
3. 정보통신기술개발 결과의 산업화촉진 지원
4. 정보통신 중소·벤처기업의 지원
5. 정보통신 연구기반조성사업 지원
6.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

[본조신설 1999.6.30]

부칙 <제20898호,2008.7.3>  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